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7
----------	-----

2025. 4. 30.(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호경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위임사항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이라 한다)」 상에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명칭)
 - (기 존)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변 경) 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
- 종전의 조항들을 변경함
(제3조→안 제4조, 제4조→안 제6조, 제5조→안 제7조, 제6조→안 제8조,
제7조→안 제9조, 제8조~제33조→안 제10조~안 제35조)
-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조례 제명과 전반적인 조문을 적합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현행 조례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자치법규 입법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입 법 평 가 >

중 합 의 견	• 해당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의 수립여부 파악이 필요하며 특히 정기적인 검토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이에 담당자 및 도민의 이해도를 확보하고자 조례 명칭 변경을 제안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나 일부 혼란방지를 위해 상위법 추가 및 본칙 수정·추가를 권고함. - 목적 규정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 -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 제2장 생태·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 제6장 보칙 → 제6장 생물다양성 보전, 제7장 보칙 - 상위법 재기재 조항 수정 :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규칙 제정 권고 필요 (조례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8조제2항, 제33조)
	평가결과 ☐ 현행유지 ☐ 일반정비 ☒ 개정권고 ☐ 통합권고 ☐ 폐지권고 ☐ 기타

- 안 제2조에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
- 안 제3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충청북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문을 신설함
- 안 제5조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수립(5년 단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 없고, 조례안 예고('25. 4. 15.~2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과 도지사의 책무 및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규정하였고, 용어 정비 등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도민 이해도를 제고하였다고 사료됨.
- 또한, 충청북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도 부합되기에 향후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실행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집행부 협의 등 조례 개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7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의자 : 김호경, 이태훈,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위임사항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상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명칭)

- (기존)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변경) 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라.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

마. 종전의 조항들을 변경함(제3조→안 제4조, 제4조→안 제6조, 제5조→
안 제7조, 제6조→안 제8조, 제7조→안 제9조, 제8조~제33조→안 제
10조~안 제35조)

바.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2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보전·관리하여”를 “보전·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1조 앞의 “제3장 습지 관리”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야생생물 보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5장 자연환경조사”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2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0조를 제32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2조로 하며,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충청북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총전의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를 “때에는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로 한다.

제33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3조로 하며, 제29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7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5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3조로 하며,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충청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서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충청북도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생태·경관의 보전 및 관리 등”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다음”으로, “충청북도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충청북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중전의 제7조) 본문 중 “제6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습지 관리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야생생물 보호

제16조(중전의 제14조)의 제목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로 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자연환경조사

제24조(중전의 제22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른”을 삭제하고, “자연환경조사

원중”을 “자연환경조사원 등”으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중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공공시설의 녹화)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연환경 보전법</u>」, 「<u>습지보전법</u>」,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을 <u>정함</u>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u>보전·관리하여</u>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u>여유</u>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은 「<u>자연환경보전법</u>」 제3조에 <u>따라</u> <u>보전·관리되어야</u> 한다. 1. <u>자연환경은 모든 도민의 자산으로 적합하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u> 한다. 2. <u>자연환경보전은 토지의 이용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야</u> 한다. 3. <u>자연환경보전에 따른 부담은</u> <u>공평하게 분담하며, 자연환경</u>	<u>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u> 제1조(목적) ----- 「<u>자연환경 보전법</u>」, 「<u>습지보전법</u>」,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u>규정함</u>----- <u>보전·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u> -----. 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은 「<u>자연환경보전법</u>」 제3조,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3조, 「<u>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u>따라</u> <u>보전·관리되어야</u> 한다. 1. <u>삭제</u> 2. <u>삭제</u> 3. <u>삭제</u> 4. <u>삭제</u>

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도
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이
용은 도민이 함께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
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
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
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4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6조의 자연환경보
전기본방침-----

-----.

② -----
----- 때에는 「충
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
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충청북도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5조 (생략)

<신설>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충청북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2장 생태·경관의 보전 및 관리 등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

----- 충청북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충청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서의 지속 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충청북도 공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행위제한) ① 생태·경관보전지
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
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행위 제한) ①-----

----- .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현행과 같음)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
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
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
가 필요한 경우

2.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
주하는 도민의 생활양식의 유
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정 당시에 실시
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
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제7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
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6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
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

제9조(중지명령 등) -----
----- 제8조제
1항-----

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3장 습지 관리

제11조 · 제12조 (생 략)

제4장 야생생물 보호

제13조 (생 략)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① ~ ⑦ (생 략)

제15조 · 제16조 (생 략)

제5장 자연환경조사

제17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생 략)

제24조(생태계의 보호 · 복원 등)

-----.

-----.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삭 제>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보호야생생물의 보호)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1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삭 제>

제19조 ~ 제23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24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연환경조사원 등-----

-.

제25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6조(생태계의 보호 · 복원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6장 보칙

제25조 · 제26조 (생 략)

제27조(공공시설의 녹화) ①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수목종류 및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 ~ 제30조 (생 략)

제31조 ~ 제33조 (생 략)

다음 각 호의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7조 · 제28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제29조(공공시설의 녹화)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 제32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제33조 ~ 제35조 (현행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

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⑦ “생 략”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용역비(5년주기)

3. 관련조문

- 안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제1항
 -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충청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5~2029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계획수립 : 외부용역 추진

나. 추계 결과 : 200,000천원(도 100%)

-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용역 1식 = 2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용역 : 도비(기금)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	200,000	-	-	-	200,000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용역	-	200,000	-	-	-	200,000
재원 조달	-	200,000	-	-	-	200,000
지방채	-	-	-	-	-	-
기 금	-	200,000	-	-	-	200,000
특별회계	-	-	-	-	-	-
구.군비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